

광주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단504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심재철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394,992원 및 이 중 18,213,864원에 대하여 2023. 9. 4.부터 2024. 2. 7.까지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8,394,9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8,394,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자백간주되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으로 원고에게 대지급금과 확정손해금이 포함된 원리금 합계액인 18,394,992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18,213,864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일인 2023.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4. 2. 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이 2023. 2. 8.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2023. 3. 9.경 연체사실을 통지받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대출기관인 C은행에 2023. 9. 4. 18,213,864원 등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2) 채무자인 피고 A은 2023. 2.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 내지 처분행위’라 한다), 2023. 2.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무자력이 되었다.

4) 피고 B은 2023. 2. 17.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23. 2. 17. 위 대출금을 가지고 피고 A이 2018. 7. 24.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받은 대출금을 E은행에 변제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E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3. 2. 17.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2023. 2. 8.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달이 경과한 무렵인 2023. 3. 9.경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가 이루어졌는바, 2023. 2. 4.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원고가 2023. 9. 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 역시 현실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추정

(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 A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을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1억 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자매인 F가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가지고 대금의 일부와 상계하였다고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 A로부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3. 2. 17. 변제로 인해 말소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 150,000,000원인 사실, 말소된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7,600,000원이고, 새로 설정된 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0,000,000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최소 32,400,000원(=150,000,000원 - 117,600,000원1)) 상당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32,400,000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원리금인 18,394,9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18,394,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채승원

별지

1) 원고가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주장,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